

1. 개정이유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임의 가입·탈퇴 절차를 신설함.

나. 농어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비(안 제115조의3)

농어업 실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에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밖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도 농어업 특례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4인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가입·탈퇴 신청)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험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보험가입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농림어업 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부터 같은 조 제3항 전단까지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을 “규칙 제1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으

로 한다.

제10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 제1조의3”으로,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으로, “어느 하나”를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업, 임업 및 어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림어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제115조의3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해양 오염 및 농지·어장 이용 제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어장 수용,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상 필요에 따른 어업 면허·허가권 제한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조치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라. 그 밖에 통상의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별지 제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적용례) 제1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도리 칸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쪽)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가입,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초 채용일(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3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합니다.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이고 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근로자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채용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다음의 직종부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901 작물재배종사자 902 낙농·사육종사자 903 임업종사자 904 어업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4.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 부분에 표시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 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7.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 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 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 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전산입력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5일)
신청인 (폐업자)	①성명 ③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주민등록번호
최종 폐업 사업장	④사업장명 ⑥소재지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⑤사업자등록번호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⑧폐업일 년 월 일
⑨구체적 폐업 사유		

⑩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등	[] 취직 (취직내용:) [] 사업 (사업내용:) [] 아니오
⑪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예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⑫채납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폐업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채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미만: 2회 이상, ③3년 이상: 3회 이상	[] 있음(채납 중인 횟수: 회) [] 없음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⑭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하십니까? * 종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⑮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 일자리 정보제공 [] 취업알선 [] 진로지도(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 직업적성검사, 심층상담과 지도 []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 희망하지 않음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자격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우편 []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전송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산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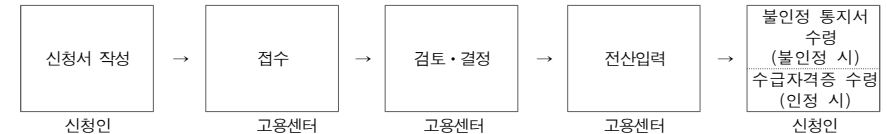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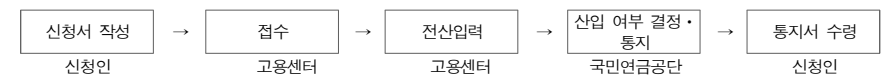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를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3(4인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가입·탈퇴 신청) 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험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보험가입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농림어업 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신청을 한 날	----- 별지 제1호의3서식----- 1. 2.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 별지 제1호의3서식-----
---	--	---	--

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 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_____.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 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② _____

 _____ 별지 제1호
의4서식 _____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호의4서식-----

⑤ (현행과 같음)

